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의 당원인 피고용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 금지 등〉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45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9.
3. 회 부 일 : 2025. 8. 2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을 고용주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u>제3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정당활동 보장)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거나 발기인 또는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②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된 사람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u></p>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표자를 통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정책을 입안·추진함으로써 정치과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선거를 통해 그 구성과 활

동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요소로서, 현대 민주 정치는 정당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정당의 본질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내에서 활동하거나 정당의 이념을 기반으로 외부에서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자유 또한 중요할 것임.

헌법재판소는 또한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정당설립의 자유뿐 아니라 누구든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고 판시하여, 정당 가입의 자유가 국민 모두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임을 명확히 한 바 있음.<sup>1)</sup>

현행 「정당법」에서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선거범죄로 선거권이 제한된 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sup>2)</sup> 정당 가입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18세 이상으로 제한된 선거권 연령보다<sup>3)</sup> 낮은 연령 기준을 설정하여 청소년기에 정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학습과 정치적 사회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

1)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판례집 26-1상, 375

2)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한편, ‘2024년도 정당의 정기보고 결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등록된 중앙당은 49개, 시·도당은 392개이고,

정당에 가입한 총 당원 수는 1,128만 4,73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약 22%, 선거인 수 대비 약 25%에 달하며, 이 중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수는 251만 6,50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5%, 선거인 수 대비 약 6% 수준으로, 많은 수의 국민이 일정한 형태로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 《 2024년 기준 정당별 당원 분포 현황 》

(단위 : 명)

| 구분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우리공화당            | 민생당              | 총합                  |
|---------------|---------------------|---------------------|------------------|------------------|---------------------|
| 당원 수<br>(%)   | 4,995,756<br>(44.3) | 4,439,796<br>(39.3) | 424,730<br>(3.8) | 382,642<br>(3.4) | 11,284,730<br>(100) |
| 당비 납부<br>당원 수 | 1,310,766           | 847,953             | 52,982           | 5,392            | 2,516,506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행법과 판례에 따라 국민의 정당 가입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을 통해 제한하거나, 근로자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과거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직, 임금,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 정당활동 등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사례 - 2023 환노위 국정감사 》

○**노웅래 위원** 그렇게 따져 봐 주시고요.

작년에 스타벅스가 반노동적 취업규칙, 사내에서 집회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물의 빚은 건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런 반노동적 규정들이 지금 기업 가치 1조 원이나 되는 유니콘기업에서 계속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하는 두나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내에서 회합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포함해서 징계할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마찬가지로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지피클립, 신선식품 새벽배송으로 알려진 오아시스,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내 집회하면 해고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진 단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과 기타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요.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메가존클라우드 같은 경우 회사 내 정치활동을 할 때는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시프트업, 모바일 게임회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내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문제의 여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웅래 위원** 노동부 표준취업규칙에 분명히 정치활동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 있다,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거나 과거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부 기업이나 단체의 내부 규정 또는 관행으로 인해 이러한 자유가 제약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정치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고용환경을 조성하여,

정당 가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법 제3조의2 신설을 통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 체계상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에 해당하며, 총칙은 법률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기본적 원칙과 체계적 위치를 제시하는 역할인 것을 고려한다면,<sup>4)</sup>

정당 입당 이후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은 제4장 “정당의 입당·탈당” 또는 제7장의2 “보칙”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

4)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p.2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sup>5)</sup>, 「국가인권위원회법」<sup>6)</sup>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인 자의 고용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당법」에 명시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32 |

5)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